

연구계약직 인사세칙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사유
<p>제3조(연구계약직의 구분) 연구계약직은 수행직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연구원 : 연구를 보조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용한 자를 말하며 경력에 따라 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</p> <p>가. 책임연구원(Senior Scientist) :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</p> <p>나. 선임연구원(Research Scientist) :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</p> <p>다. 박사후연구원(Post-doctoral Research Associate) : 박사학위 취득자</p> <p>라. 연구원(Researcher) :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</p> <p><u>다만, 계약 시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전문학술지 책임급 10편 이상, 선임급 5편 이상에 준하는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 해당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</u></p> <p>2. 행정원 : 연구의 행정지원업무를 보조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용한 자</p> <p>3. 기능원 : 연구의 단순노무업무를 보조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용한 자</p>	<p>제3조(연구계약직의 구분) ① 연구계약직은 수행직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연구원(Research Staff):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용한 자를 말하며 경력에 따라 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가. 책임연구원(Principal Research Staff): (현행유지)</p> <p>나. 선임연구원(Senior Research Staff): (현행유지)</p> <p>다. 박사후연구원(Post-doctoral Research Associate): 박사학위 취득자</p> <p>라. 연구원(Research Staff):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</p> <p>마. 전문연구요원(Technical Research Personnel): 박사과정 수료연구생으로서 병력특례 의무 종사자</p> <p>2. 연구행정원(Research Administrative Assistant): 연구의 행정 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채용한 자</p> <p>3. 기능원(Laboratory Assistant):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채용한 자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취득자가 다음에 준하는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, 해당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직위</p>	<p>- 영문명칭 확정에 따른 영문명칭 수정, -연구원 정의 수정</p> <p>- 전문연구요원의 정의추가</p> <p>행정원 명칭 변경</p> <p>기능원 정의 수정</p> <p>단순문구수정</p>

	<p><u>를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책임연구원: 전문학술지 10편 이상</p> <p>2. 선임연구원: 전문학술지 5편 이상</p>	
제4조(예산의 원칙) 연구계약직의 급여, 퇴직금, 국민연금, 의료보험 등 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제4조(예산의 원칙) 연구계약직의 급여, 퇴직금,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등 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단순 문구수정
제8조(주관부서) 연구계약직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<u>교무처</u> 에서 주관한다.	제8조(주관부서) 연구계약직 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원 인사 담당부서 에서 주관한다.	담당부서 변경
제10조(계약기간의 제한) 계약기간은 일정한 사업(과제)수행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대학은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를 제외한 연구계약직의 경우 그 기간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	제10조(계약기간의 제한) 계약기간은 일정한 사업(과제)수행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대학은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및 전문연구요원 을 제외한 연구계약직의 경우 그 기간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	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(3년)에 맞는 계약체결을 위해 제외자로 추가 포함
제11조(임용의 제한) ①~③ 생략 ④ <u>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실험실벤처기업 및 별도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 내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검직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검직 승인 신청서에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부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.</u> ⑤ 생략	제11조(임용의 제한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재직 중인 자가 공동연구 등의 사유로 검직이 필요할 경우,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할 수 있다. ⑤ (현행과 같음)	표현 단순화
(신설)	제6장 기타사항	제24~27조의 내용은 '제5장 면직'에 맞지 않는 내용임으로 다른 장으로

<p>제24조(보험가입) 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(임금채권보장 보험)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며 <u>개인연금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고용보험,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대학 연구 간접비에 일괄 부담하며,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4조(보험가입) ① 연구계약직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(임금채권보장 보험)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며 개인부담금은 본인 급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삭 제</p>	<p>분리</p> <p>규정 현실화: 문구수정 및 고용, 산재보험의 납부방법 변경으로 각 학과/행정부서에서 자원 분배토록 변경되었음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회칙은 2014년 0월 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p>	